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70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01호, 2021. 12. 27.)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에 대한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철도운영자 및 철도차량 제작사,
철도차량 정비사 간의 그 수습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복구 조
치를 취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철도차량정비”의 기존 용어를 유럽 및 국내법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
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음(제2조제1호 개정)
- 나. 철도운영자가 정비결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탁정비자
및 철도차량 제작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소재에 따라 그 책임
을 지도록 함(제10조제2항3호 개정)
- 다. 철도차량정비 주체와 차량제작사의 정비책임 및 보증사항을 명확
화하고 이에 따른 예외사항 제시(제10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영안전과
- 전화 : 044-201-4613, 4610 / 팩스 : 044-201-5672